資料

日本石油連盟의 石油稅制 개선안

日本 石油連盟은 최근 石油諸稅에 관한 현행법률의 개선점을 지적, 86년도 稅制개정시 반영시켜 줄 것을 통산성에 요청했다. 석유연맹의 석유세제 개선안 전문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 〈편집자 주〉

Ⅰ. 石油諸稅

1. 石油諸稅의 경감

(1) 原油관세의 철폐

－조치내용 : 原油관세를 철폐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2) 가솔린稅(휘발유稅 및 지방도로세), 경유세, 석유가스세, 항공기 연료세의 증세 반대

－조치내용 : 가솔린稅(휘발유稅, 지방도로세), 경유세, 석유가스세, 항공기 연료세의 증세 반대, 이들 세금의 경감조치를 강구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조세특별조치법 제89조, 지방세법부칙 제32조의 2, 석유가스세법 제10조, 항공기 연료세법 제11조

(3) 石油稅의 경감·석유대책으로 용도 한정

－조치내용 : 石油稅의 세율을 경감하고, 용도를 석유대책에 한정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石油稅法 제9조, 석탄·석유 및 석유대체에너지 대책 특별회계법

日本 경제로서 1차 에너지 공급의 중심을 이루는 石油의 코스트 절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石油 코스트는 이미 原油가격이 대폭 상승한데다 3조1천652억円(85년도 예산, 약 10$/B)에 달하는 거액의 석유제세에 의해 더욱 높아졌으며, 이들 石油제세가 石油産業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유제세는 국세수입중 6.7%(85년도 예산)에 달해 간접세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러나 그 사용용도는 석유대책에 불과 13% 밖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이 도로정비(79.3%), 석탄대책(4.0%) 등 石油 대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石油를 포함한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코스트절감이 에너지 정책의 기본명제로 간주되고 있는 오늘날 石油의 코스트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제세의 철폐, 경감 등 근본적인 수정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석유대체에너지로의 전환 도입을 위한 재원을 석유에서 확보하는 것은 하루 빨리 지양하여 에너지간의 불공정한 세제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石油諸稅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原油관세 : 이 세는 유럽 주요국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으며, 관세율 심의회에서도 5회에 걸쳐 보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무세」임에도 불구하고, 55년대에 석탄에서 石油로 급속히 연료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석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잠정적으로 그 대책 재원으로 설치되었으

나, 현재는 정세가 일변하여 반대로 石油에서 석탄으로의 연료전환이 급속히 진전되어 석유산업만이 심각한 곤경에 처하고 있다.

石油는 석탄에 비해 原油관세와 과세와 이를 재원으로한 석탄산업의 조성으로 더욱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原油관세는 즉각 철폐하여 에너지간의 불공정한 세제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60년 4월 이후 原油 관세 등으로 석탄대책에 충당된 누계액은 약 2조1천600억円).

▲가솔린稅 : 이 세는 54년 4월에 긴급 임시적 조치로서 도로 정비재원으로 설치되었으나, 이미 약 30년이 경과하였다. 이 동안에 두번에 걸친 석유위기를 계기로 OPEC에 의한 原油가격의 대폭 인상 등 석유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7회 걸쳐 세금이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石油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경유세 및 石油가스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로정비 재원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솔린稅 등의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오히려 경감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石油稅 : 이 세도 歐美주요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으며, 석유비축 등을 중심으로 한 석유대책재원으로서 78년 6월에 창설되었다. 종가세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후의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폭적인 증세가 반복되어 왔다. 더우기 84년도 세제 개정시에도 석유업계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유별 회계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석유세율 인상(3.5→4.7%), 수입LPG·LNG 등에 대한 신규과세(1.2%)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높은 세율, 거액의 石油稅 과세에다 석유세를 재원으로 한 석유대체 에너지 조성에 의해 石油는 2중부담을 안고 있으며, 석탄·LNG등 석유대체 에너지에 비해 더욱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석유 세율을 경감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인 석유대책에만 한정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Ⅱ. 國 稅

1. 法人稅

(1) 에너지 이용 효율화 설비등의 특별상각 또는 法人稅 공제제도의 대상설비의 추가 및 적용기한의 연장

－조치내용 : 에너지 이용 효율화 설비중 석유자원의 이용 고도화에 투자하는 설비(2차정제설비)의 대상설비에 알킬레이션 설비를 추가하고, 당해 설비 등에 대한 특별상각제도(첫년도 100분의 7)가 86년 3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해줄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 5 제1항, 동 시행령 제27조의 5, 84년 대장성 고시 제39호.

석유제품 수요의 輕質化에 대응하여 민수용을 중심으로 한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석유자원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설비의 건설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고도화 설비의 건설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운전 코스트가 크게 증대하여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접촉분해장치, 水素化 분해장치등의 석유정제 2차설비를 도입하여 설비고도화를 촉진하고, 석유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는 조성조치의 일환으로서 84년도 稅制개정시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등 투자 촉진세제」가 도입되었고, 석유정제 2차 설비가 「석유자원의 이용 고도화에 투자하는 설비」로서 그 대상이 되었다.

한편, 이들 2차설비등에서 부생하는 분해가스는 그 품질이 나빠서 그 상태로는 용도가 自社공장의 정제용 연료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석유 제품수요의 경질화에 대응하여 이들 저질가스의 품질을 높여 석유자원으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알킬레이션 설비가 매우 유효하며, 석유자원의 이용고도화에 투자하는 설비로서 이 설비를 새로이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설비의 건설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2) 海外投資등 손실 준비금 제도의 적용기한의 연장

－조치내용 : 해외투자 손실 준비금제도의 적용기한이 86년 3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해 줄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조세특별조치법제55조

현재, 석유탐광·개발사업 추진책의 일환으로서 자원탐광·개발단계에 있는 法人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해외투자등 손실 준비금으로서 적립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 안정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외에서의 석유탐광·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3) 公害방지 관계설비에 대한 특별 상각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조치내용 : 公害방지 관계 설비(폐수처리용 설비, 매연처리용 설비, 탈취용 설비)에 대한 특별상각제도(첫년도 100분의 22)가 86년 3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해 줄 것.

-근거법령 및관련조문 : 조세특별 조치법 제43조 제1항, 84년 대장성고시 제40호, 85년 대장성고시 제48호

폐수처리용 설비, 매연처리용설비, 탈취용 설비는 모두 조세특별 조치법 제43조 제1항, 표 제1호에 의거 공해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재해방지에 투자하는 설비로서 첫년도에 100분의 22의 특별상각이 인정되고 있다. 石油기업은 이들 설비를 건설하고, 국가의 정책요청에 협력해 왔다. 앞으로도 환경규제에 적응해가기 위해서는 이들 설비의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4) 石油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할증 상각제도의 인정요건의 개정

-조치내용 : 石油가스 저장시설의 인정요건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중 「저장량 기준」을 삭제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9조 4 제1항

石油가스 비축은 긴급시에 대비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석유비축법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다.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할증상각제도의 인정요건에 대해서는 현행, ▲저장량 기준(원칙적으로 전년도의 비축수량을 상회할 것) ▲저장일수기준(通産省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할 것) 등 두가지 요건이 있다. 그러나, 석유가스 비축수량은 ▲산유국의 공급사정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등, 한 기업의 판단으로 그 증감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 ▲하·동절기의 수급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의 운전재고량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기업의 비축 증강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의 비축량이 전년도의 비축량을 밑도는 경우가 있으며, 저장량 기준은 석유가스 비축의 실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인정요건으로서는 「저장량 기준」을 삭제하고 「저장일수기준」만 설정해야 할 것이다.

(5) 石油資源 탐광 투자 준비금 제도의 창설

-조치내용 : 현행 탐광준비금과는 별도로 석유정제·원매기업을 대상으로한 석유자원 탐광투자준비금 제도를 새로이 창설할 것.

▲적립기준 : 석유정제·판매수입의 1,000분의 3, 또는 석유정제·판매소득의 100분의 2중 낮은 쪽의 금액

▲환입기준 : 적립시부터 5년 경과후 익금 산입.

환입특례 : 당해준비금의 적립후 3년간 「적격지출」(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경과후의 연도부터 새로운 적립을 중지하고, 또한 이미 적립한 준비금을 일괄 익금산입한다(이에 의해 일단 준비금 계상의 권리를 상실한 법인이 새로이 적격 지출을 한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부터 다시 준비금의 적립을 할 수 있다).

*註 : 석유탐광사업을 하는 것이 日本의 석유자원 확보라는 면에서 유용함을 通産省이 인정한 탐광사업계획에 의거한 지출을 말하며, 자원 탐광사업법인에 대한 出資를 포함한다.

-근거법 및 관련조문 : 조세특별 조치법

석유정제, 元賣기업은 석유제품의 공급안정 확보를 위해 본래 스스로 原油를 탐광개발하고 정제판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석유탐광은 막대한 자금과 오랜 선행기간이 필요한 매우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다. 이 위험부담이 큰 탐광투자는 기업의 내부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나, 석유정제·원매기업의 수입은 기업노력이 미치지 않는 OPEC의 원유가격정책, 환율변동 등에 의해 불안정하며, 또한 수익수준이 낮기 때문에 탐광자금의 내부축적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石油開發稅制는, ▲석유탐광, 개발회사로서 내부자금 축적책으로서의 탐광준비금, 지출단계에서의 탐광비의 특별 공제제도, ▲석유탐광, 개

발회사의 외부자금 도입 촉진 세제로서의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제도는 탐광·개발투자가 확정된 경우의 세제이어서 석유정제, 원매기업이 탐광자금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석유정제 원매기업의 석유개발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정제·원매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탐광자금의 사전확보를 도모하여 석유탐광 개발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세제로서 석유자원탐광 투자준비금 제도를 창설해야 할 것이다.

(6) 수취 배당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특정이자에 석유수입 금리의 추가

－조치내용 : 수취배당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특정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석유수입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 유전스 금리, 엔화 베이스 수입결제 어음 할인료를 포함할 것.

－근거법 및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동시행령 제22조.

수취배당 등은 이것을 지불하는 法人 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수취한 법인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익금액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수취배당 등의 금액에서 그 주식 등에 관한 분의 지불금리를 공제한 금액이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특정이자」는 이 지불금리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석유수입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 유전스금리, 円화 베이스 수입결제 관계 어음 할인료는 현재 지불금리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것들은 배당등을 받기 위해 그 본래 자금이 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필요한 지불금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익금불산입액＝수취배당등－〔(지불이자－특정이자)×배당 등의 원천이 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총자산의 장부가액〕

▲특정이자 : 수취배당등의 원천이 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충당되지 않는 이자로서 특정된 것이며, 사채이자, 장기차입금이자, 어음 할인료 등이 있다.

83년도 세제개정시에 금융보험업에 대해 종래 특정이자로서 인정되었던 「코레스폰던트 계약」*에 관한 외화베이스 부채이자가 수정되어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화베이스 부채이자가 특정이자로서 인정되었다.

*註 : Correspondent agreement : 서로 다른 지역의 회사나 조직이 정기적인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어떤 특정업무에 관해 일종의 지점과 같은 형태로 업무계약을 한 것을 말한다.

(7) 価格變動 준비금 제도의 존속

－조치내용 : 가격변동 준비금 제도는 85년도를 끝으로 폐지되게 되었으나, 86년도 이후에도 현행 적립률(85년도는 0.5%) 이상으로 존속시켜야 할 것이다.

－근거법령 및 관련 조문 : 조세특별 조치법 제53조

가격변동 준비금 제도는 가격하락에 의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변동이 심한 상품으로서 原油등의 주요 자산의 일정비율을 준비금으로서 적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실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原油가격은 산유국의 정책 및 환율변동에 의해 크게 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한 변동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특히 국제석유수급의 완화에 의해 原油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석유산업은 여타 산업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석유비축법에 의해 90日分의 비축의무가 과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비축은 막대한 금액에 달하며 가격변동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86년도 이후에도 현행 적립률(85년도는 0.5%) 이상의 비율로 존속시켜야 할 것이다.

2. 間接稅

(1) 석유화학용 국산 나프타에 대한 石油稅의 면세조치 창설

－조치내용 : 油化用 국산 나프타에 대한 석유세의 면세조치를 창설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조세특별 조치법 제90조의 3.

油化用 수입 나프타는 석유세가 면세되고 있는 반면, 原油를 수입 정제하여 생산하는 국산 나프타에 대해서는 원유수입 단계에서 석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것은 균형을 잃은 조치로서 국산 나프타에 대한 석유세를 납세의무자인 석유정제업자에게 면세해 주는 조치를 창설해야 할 것이다.

(2) 석유제품 제조용 연료에 대한 석유세의 면세조치 창설

－조치내용 : 原油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연료에 대한 석유세의 면세조치를 창설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석유세법

석유세 과세에 의한 石油코스트의 부담증가를 경감하기 위해 적어도 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연료에 대해서는 석유세를 면제해야 될 것이다.

(3) 円화 베이스 수입 결제관계 어음에 관한 인지세의 최저 정액세율의 적용

－조치내용 : 円화베이스 수입결제 관계 어음에 관한 인지세에 대해 최저 정액세율(200円)을 적용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인지세법 제7조 제1항

석유기업이 석유수입 결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에 관한 인지세는 수입금액에 따른 계급정액세율(200엔－20만円)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수입 결제자금 조달을 위해 현재 외화 베이스로 발행하는 어음의 인지세는 최저 정액세율(200円)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표시가 円화라고 해도 성질·목적이 외화표시와 똑 같은 것이다. 따라서 円화 베이스 어음에 대해서도 최저 정액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 6월부터 円화베이스 은행인수 어음시장이 창설되므로 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고액의 인지세를 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關 稅

(1) 中間溜分 석유제품 등의 증산에 관한 관세환급 제도의 환급액의 인상 및 적용기한의 연장

－조치내용 : 中間溜分 석유제품 등의 증산에 관한 관세환급제도의 현행 환급액을 원유관세부담 상당액까지 인상할 것. 그리고 이 제도가 86년 3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므로 기한을 연장해 줄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관세 잠정조치법 제7조 4.

앞으로 日本의 석유제품 수요는 灯油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輕質化 추세를 보일 전망이며, 등유 등의 중간류분을 안정공급 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인 과제이다. 중간류분의 공급안정 및 석유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중간류분 증산설비의 건설, 중유탈황 설비 등의 중간류분 증산형으로의 개조 및 운전조건의 개선등 설비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거액의 설비자금이 필요하며, 코스트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들 설비면에서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83년도에 중간류분 석유제품 등의 증산 설비에서 생산되는 中間溜分 석유제품등에 대한 원유관세의 환급제도가 창설되었으나, 중간류분 증산설비의 건설, 기존설비의 개조·운전조건의 변경 등에 필요한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 현행 환급액(중간류분인 석유제품=440円/Kℓ, 중질유 석유제품=370円/Kℓ)을 原油관세 부담 상당액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86년 3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끝나므로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시야 할 것이다.

(2) 重油에 대한 관세할당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조치내용 : 중유에 대한 관세할당제도가 86년 3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관세할당 제도에 관한 법령

日本의 1차 에너지 공급중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석유제품을 안정 공급하기 위해 현행 重油관세 할당제도하에 국내공급이 곤란한 저유황 중유를 필요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Ⅲ. 地方稅

1. 輕油稅

(1) 품질시험용 경유에 대한 輕油稅의 면세조치 창설

－조치내용 : 품질시험(당해 시험용 기구의 세척용을 포함)에 사용되는 輕油에 대해서는 경유세를 면세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700조 4～6.

輕油稅는 지방세법에 의거한 도로정비 재원으로서의 목적세이며, 또한 도로사용에 직접 관련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되고 있다. 따라서 품질시험과 같은 도로사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용도로 공급되는 輕油에 대해서는 경유세의 면세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固定資産

(1) 공해방지 관계 설비에 대한 고정 자산세의 비과세 및 경감조치의 적용기한 연장

－조치내용 : 폐수처리용 시설, 매연처리시설, 질소산화물 발생억지 연소 개선 설비, 악취 배출방지 설비,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정자산세의 비과세 조치 및 확산용 고연통, 소음방지 시설의 고정자산세 3분의 2의 경감조치가 85년도에 적용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이 기한을 연장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4조 제2호～6호, 동법 부칙 제15조 제9항

폐수처리시설, 매연처리시설, 질소산화물 발생억지 연소개선설비, 악취배출 방지설비,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정재산세의 비과세 및 확산용 고굴뚝, 소음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公害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재해방지에 투자하는 설비로서 고정자산세의 3분의 2 경감이 인정되고 있다. 석유기업은 이들 생산 효과가 전혀 없는 설비를 건설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면서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국가 및 지역주민의 공해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공해방지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들 건설의욕을 잃지 않도록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2) 石油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固定資産稅 경감제도의 경감률 인상 및 적용기한의 연장.

－조치내용 : 石油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경감제도의 경감률을 3년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일 것. 또한 이 제도는 85년도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할 것.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3항

石油가스 비축은 긴급시에 대비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석유비축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석유가스 기업은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경감률을 3년간 3분의 1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 〈日本 旬刊石油政策 7/5〉

新刊案内

国内 唯一의 石油産業 海外弘報誌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5

—大韓石油協会 弘報室—

이웃마다 믿는 마음 거리마다 밝은 마음